경기력지원금관리지침

제정 2017. 8.23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각 시도골프협회 및 산하연맹(이하 "시도·연맹체"라 한다.)에 지원하는 경기력지원금(이하 "지원금"라 한다.)의 지원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본 지침은 시도·연맹체가 대한골프협회(이하 "KGA"라 한다.)로 부터 지원받아 집행하는 지원금에 적용한다.
- 제3조(재원) KGA가 지원한 경기력지원금을 재원으로 한다.
- 제4조(용도) 지원금은 시도·연맹체의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우선 배정되어야 하며 인건비, 행정비등의 경상비로 집행할 수 없다.

제2장 편성 및 배정

- 제5조(확보) KGA는 전년도에 익년도의 지원금 사용계획을 편성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. 단, 부득이하게 지원금 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 중단·보류·축소 될수 있다.
- 제6조(연간 배정) KGA는 확보된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·연맹체의 지원 실적, 재정규모, 정책우선순위,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단체별 연간배정액을 매년 예산편성 한다.
- 제7조(계획 및 승인) ① 시도·연맹체는 KGA로부터 연간 배정액이 편성된 후 KGA 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연간사업계획서를 제9조에 의거,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② 시도·연맹체의 대의원총회 미승인 및 회장 유고 등의 사유로 사업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KGA의 승인을 얻어 일부 집행할수 있다.
- 제8조(자금의 교부) 지원금은 KGA의 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교부하되, 필요한 경우 자금교부 시기 및 자금 교부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3장 사업의 수행

- 제9조(사용범위) ① 지원금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기력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 - 1. 시도 대표선수 훈련
 - 2. 주요 국제대회 파견
 - 3. 주요 국내경기대회 및 국제경기 개최
 - 4. 훈련용 기구 및 용품 구입
 - 5.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동호인 대회
 - ② 시도·연맹체에 배정된 당해연도 지원금의 집행은 시도·연맹체의 실정에 따라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용도외 사용의 금지) 시도·연맹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관계 규정의 정한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, 지원비를 제9조에 정한 범위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제11조(정산보고서 작성) ① 시도·연맹체는 당해연도 지원금의 해당 회계연도 종료 일로부터 30일 이내 KGA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지원금의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.
 - ②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단체에 대해서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까지 당해연도 지원금을 보류할 수 있고, 지연 기간에 따라 익년도 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.
 - 1.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%이내 지원금 감액
 - 2.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%이내 지원금 감액
 - 3.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%이내 지원금 감액
- 제12조(사용결과 처리) ① KGA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사업 결과보고서를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완 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의 수행실적이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KGA는 전항의 지원사업 사용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확정한다.
- 제13조(시정조치) KGA는 제11조에 의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, 그 실적이 본지침과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비의 교부결정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정

산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도·연맹체에 대해 지원사업 내용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4장 변경, 취소 및 반환

- 제14조(배정액 변경) KGA는 제6조에 의한 단체별 지원금 확정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의 배정을 조정·변경할 수 있다.
- 제15조(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) ① KGA는 시도·연맹체가 지원금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관계규정 및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.
 - ② KGA는 전항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시도·연맹체는 KGA의 지원금 반환 요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이의 신청) ① 시도·연맹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,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KGA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KGA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도·연맹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·연맹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7조(반환명령) KGA는 시도·연맹체가 지원금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도·연맹체에 보조하는 지원금 지원을 중단 또는 보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5장 보 칙

- 제18조(별도 계정의 설정 등) ① 시도·연맹체가 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단체 명의의(개인명의 통장 사용금지) 통장을 개설하여 지원 받아야 하며, KGA 지원금과 타 지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
 - ② 시도·연맹체는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지원금, 자체별 계정을 구분 설정하고, 지원금 계정의 항에 "KGA 지원금"을, 목에 사업명을 각각 명기하여야 한다.
- 제19조(회계책임자 임명 및 조치) ① 시도・연맹체는 지원금의 출납을 관장할 재무

- 원(전무이사 또는 사무국장 이상), 회계 관련 직원(상근직원 1명)을 선정하여 KGA에 보고해야 하며, 담당자가 변경 될 경우 즉시 교체 보고 하여야 한다.
- ② 시도·연맹체는 재무원 및 회계 관련 직원에 대한 임면관리 및 징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·연맹체가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KGA가 이를 조치요구할 수 있다.
- 제20조(지원금 제한) ① KGA는 지원금 사용에 있어 본 지침을 위배하거나 목적 외사용, 허위정산, 금전사고발생 등의 해당 시도·연맹체에 대하여 익년도에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당해연도에 일정기간 동안 지원 중단 및 감액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조치한다.
 - ② 시도·연맹체가 KGA 정관 및 제 규정이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KGA 정관 제7조 3항에 의거 지원금의 지원 보류, 중단, 감액 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.
 - ③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, 횡령·배임, 회계부정 및 승부조작, 편파판정, 폭력·성폭력과 관련한 사건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21조(적립 및 관리) 시도·연맹체는 당해연도 지원금에 대한 적립을 할 수 없으며, 사업 집행에 따른 잔액 발생 시 반드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22조(타 규정의 적용)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KGA 이사회 의결로서 결정한다.

부 칙 <2017. 8.23.>

제23조(시행일) 이 관리지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【참고】

『 0000년 경기력지원금』정산보고서 제출자료

□ 집행 및 정산에 관한 행정사항

- ㅇ 선수훈련비 및 대회운영을 위한 진행비 사용이 원칙
- o KGA 경기력지원금과 타 지원금 중복정산 불가
- ㅇ 단체명의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가 원칙
 - 개인카드 및 현금집행 불가
 - 개인 선 결제 후 입금 받는 방식 불가
 - 계좌이체 시 세금계산서(또는 계산서) 발행 필수 (물품구입, 임차료, 항공료 등)
- 0 위원회 및 임원 등 각종 회의비 집행 불가
- ㅇ 현금시상(장학금, 모범선수상, 선수격려비 등) 인정 불가

□ 정산서 첨부물

- 1. 사업총괄표 및 정산보고서 각 1부(서식 1, 2호 참조)
- 2. 통장 거래내역 사본(해당 사업기간 관련 모든 거래내역 내용 포함)
- 3. 증빙자료(견적서, 카드전표, 계좌이체 입금증 및 세금계산서 등)
- 4. 증빙서류 일체
 - -일자별 집행세부내역서의 순서별로 관련 증빙자료 서류 편철 각 1부

경기력지원금 사업총괄표

1. 총괄내역

(단위 : 원)

사 업 명	기 간	장 소	금 액	비고
7				

※ 유의사항

- •사업명에는 대회명 또는 훈련비 등 실제 집행하는 사업(행사)명 기재
- ·작성 순서는 일정 순으로 작성하되 연간사업은 마지막에 작성

[서식 제2호]

정 산 보 고 서

1. 정산 총괄표

(단위 : 원)

예 ?	산액(총사업	비)	집 행 액			집행잔액		
지원금	자체부담금	계	지원금	자체부담금	계	지원금	자체부담금	계

2. 집행액 세부내역

(단위 : 원)

	7) =1) A	집 행 액				
단위사업명	집행내역	지원금	자체부담금	계		
(예시) 대회명, 훈련비 등 사업명	숙박비					
	식 대					
	트로피					
	ㅇ개 X ㅇ원					
	소 계					
·	·					
	소 계					
	합 계					

※ 유의사항

- 집행내역 작성 시 수량 및 단가 표기
- 집행액은 증빙 자료 제출 금액 기준으로 작성
- 증빙자료 첨부(세금계산서/견적서/입금증/시.도 협회, 연맹 카드전표)

계좌이체 내역서

	영수증 및 기타 증빙자료
대 희 명	
장소/기간	
참가자(수혜자)	
집행금액	
집행내역	

법인카드 내역서

	영수증 및 기타 증빙자료	
대 회 명		
장소/기간		
참가자(수혜자)		
집행금액		
집행내역		

[서식 제3-3호]

〈 수당 등 수수료 집행내역서 첨부 서식 〉

수당 등 수수료 집행 내역서

순번	이름	임무	전화번호	주민번호 (앞6자리)	주소	통장계좌	금액	서명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
※ 본 집행에 대한 계좌이체확인증을 첨부 요망, 계좌이체확인증에 위 내역의 순번과 동일 번호 표기